

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1999. 12 . 2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9. 12. 20
- 다. 상정일자 : 제73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제1차조례특위('99.12.21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이경식)

가. 제 안 이 유

-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적인 사회복지 직렬로 정원채정 및 승인조치됨에 따라 그에 상응한 정원을 새로이 개정하기 위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정원채정에 따라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
 - 총정원 501명 ⇒ 505명(증 4명)
-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조정
 -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조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허해성)

-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따라 우리군 사회복지요원의 정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현원 3명을 포함한 전원을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변경됨에 따라 총정원 501명에서 4명을 추가하여 505명으로 조정하고 연도별 감축 정원인원에 4명을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서
- 조례개정과 신규채용에 따라 배치될 경우 현행 배치된 평창, 대화, 봉평을 제외한 5개 읍면도 추가 배치될 계획이며,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상에 정하고 있는 직렬별 인원도 일반직은 4명이 늘어나고 별정직은 4명이 감소할 것임.
- 본 조례는 상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